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2025. 9. 2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 광변색 눈보호구 제품 안전기준 적용
- 세부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s://www.kats.go.kr/> → 소식 → 고시·공고 )에서 확인

❖ 신구조문대비표(일부 발취)

이전	개정																
5.3.2.3 투명도 시야범위(5)의 투명도는 투명도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무색 눈 보호구는 시감 투과율이 85 % 이상이어야 하고 착색은 20 %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착색 눈 보호구는 착용자가 색상을 식별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신설)	(삭제)																
6.2.7 투명도 분광 감도 분포가 표준비 시감도 곡선에 거의 일치하는 광선 수광기를 사용하여 A표준 광원에 대한 시감 투과율 측정을 하여 A표준 광원에 대한 시감투과율을 측정한다. (신설)	5.3.2.3 투명도 시야범위(5)는 투명도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5.3.2.3.1 무색 시감 투과율은 80 % 이상이어야 한다. 5.3.2.3.2 착색 a) 단일 색상 눈 보호구의 시감 투과율은 20 % 이상이어야 한다. b) 광 변색성 눈 보호구의 시감 투과율은 퇴색 상태에서 80 % 이상, 착색 상태에서 20 % 이상이어야 하며 광 변색성 반응은 1.25 이상이어야 한다. 6.2.7 투명도 ----- 시감투과율을 측정하고 광 변색성 눈 보호구의 투명도는 7.4에 따른다. 7.4 검사항목의 조건 광 변색성 눈 보호구의 투명도는 아래 표에 주어진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국제)공인시험기관 또는 UNECE(유럽경제위원회)가 승인한 형식승인 및 기술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table><tr><th>표준명</th><th>조항</th><th>적요 범주</th></tr><tr><td rowspan="2">UNECE REGULATION No. 22.06</td><td>6.16.3.4</td><td>퇴색, 착색</td></tr><tr><td>7.14.1</td><td>상대 시각 감쇄 계수 불필요</td></tr><tr><td rowspan="2">ISO 12312-1</td><td>5.2</td><td>필터 범주 0 및 2</td></tr><tr><td>5.3.4.1</td><td>광 변색성 필터 추가 요구사항</td></tr><tr><td>비고</td><td colspan="2">제출된 시험 결과는 이 안전기준의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td></tr></table>	표준명	조항	적요 범주	UNECE REGULATION No. 22.06	6.16.3.4	퇴색, 착색	7.14.1	상대 시각 감쇄 계수 불필요	ISO 12312-1	5.2	필터 범주 0 및 2	5.3.4.1	광 변색성 필터 추가 요구사항	비고	제출된 시험 결과는 이 안전기준의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준명	조항	적요 범주															
UNECE REGULATION No. 22.06	6.16.3.4	퇴색, 착색															
	7.14.1	상대 시각 감쇄 계수 불필요															
ISO 12312-1	5.2	필터 범주 0 및 2															
	5.3.4.1	광 변색성 필터 추가 요구사항															
비고	제출된 시험 결과는 이 안전기준의 안전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